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0-12월호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목 차

- 북한 「인민경제계획법」 주요 내용 분석

북한 「인민경제계획법」 주요 내용 분석

I.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 동향

1. 제정 배경

1) 북한 경제의 붕괴

- 90년대 이래 북한은 식량 및 에너지난과 같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각급 계획기관들의 중앙집권적 계획화 및 통제적 기능이 크게 저하됨
- 특히 공식경제부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에서 비공식부분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졌으며, 북한 주민들은 생존 유지를 위해 시장경제의 요소가 가미된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함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시장경제 확산 추세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의식함. 이는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됨

2) 계획경제의 강화와 규율화를 위한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통제·관리를 추진하려 하였으며¹⁾ 경제난으로 이완된 계획부분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느낌
- 특히 공식경제부분의 계획화 기능과 통제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의 침투를 방지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함

3) 북한의 인민경제계획화 정책과 인민경제계획법의 관계

- 북한의 『광명백과사전』에 따르면 인민경제계획화에 대하여 기본원칙, 속도와 균형, 일원화와 세부화, 계획의 형태, 계획지표, 계획항목, 작성방법, 부문별 계획화, 종합계획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²⁾ 특히 경제계획화의 기본원

1) 제성호·임강택, 『북한 「인민경제계획법」의 분석 및 평가』, 통일연구원, 1999, 3면.

칙으로 당정책 관철의 원칙, 군중노선 구현의 원칙, 과학성 보장의 원칙, 경제적 실리 보장의 원칙 등 4가지를 강조하고 있음³⁾

- 북한은 인민경제의 부문별계획화와 종합계획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부문별계획화에는 “공업생산계획, 농업생산계획, 정보산업계획, 기본건설계획, 운수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상품류통계획 등” 이 포함되며 종합계획화에는 “사회총생산물생산계획, 국민소득의 생산 및 리용계획, 로력자원의 형성 및 분배계획, 고정재산의 재생산계획, 종합재정계획,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 등” 이 포함됨⁴⁾
- 이러한 북한의 인민경제계획화는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이 되는 정책이며 이를 법제화하고 체계화 한 것이 바로 「인민경제계획법」임

2. 김정은 정권에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과 인민경제계획법의 개정

- 김정은 정권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북한은 경제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함
- 이는 2012년 당시 김정일 사후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경제관리 개선방안 지시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
- 김정은의 경제관리 개선방안으로 내각 권한의 강화, 기업소에 노동보수 지불 및 상품가격 제정 권한 부여, 국영 유통망 활성화, 농업부문 개편 등의 안이 마련되었음⁵⁾
- 이후 2014년 5월 30일 ‘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⁶⁾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어 같은 해인 2014년 7월에 내각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북한의 몇몇 경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인민경제계획법」은 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개정됨⁷⁾

2) 북한에서 계획은 생산, 자재조달, 가격 및 이윤, 자금조달 등 기업경영의 전반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지표는 주로 물질 생산계획 작성 시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것이다. 『광명백과사전 5(경제)』, 백과사전출판사, 2010, 220-221면.

3) 『광명백과사전 5(경제)』, 백과사전출판사, 2010, 222면.

4) 『광명백과사전 5(경제)』, 백과사전출판사, 2010, 224-225면.

5) 이석기 외 6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53면.

6)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다.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19, 142면.

7)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이후 개정된 경제 관련 법령은 「인민경제계획법」 이외에도 「기업소법」,

-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기존에 공식경제부문의 계획화 기능과 통제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이 특징임⁸⁾

II.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의 주요 내용

1. 인민경제계획법의 개요

- 「인민경제계획법」은 총 6개의 장과 4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⁹⁾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 「인민경제계획법」은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이루어져 있음
- 이러한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의 수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봄

2.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제1장)

- 「인민경제계획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라고 설명하면서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함(제2조)
- 또한 중앙집권적 지도원칙을 고수하여 중앙의 지도 아래에서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 이 밖에도 장성속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제4조), 인민경제계획을 생산자와 토의하여 세워서 생산자로 하여금 의욕을 고취시키는 원칙(제5조), 인민경제계획의 정확한 실행이 인민경제를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라는 원칙(제6조), 인민경제계획을 일원화·

「농장법」, 「무역법」, 「재정법」이 있다.

8) 「인민경제계획법」은 제13조에서 기업소지표를 규정하여 기업이 지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8조에서 주문계약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9) 북한어로 총화는 생활총화, 사업총화, 실행총화 등의 용어로 쓰이는데, 여기서의 총화는 주로 사업의 형편이나 상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일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query=%EC%B4%9D%ED%99%94&dicType=1&wordMatch=N&searchType=¤tPage=1&cateCode=1&fieldCode=&spCode=&divSearch=search&infoType=confirm&rowsPerPage=10&sort=W) 참조.

세부화하여 실현하여야 한다는 원칙(제7조),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과학화 해야한다는 원칙(제8조), 인민경제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양성원칙(제9조)을 세우고 있음

3.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제2장)

- 「인민경제계획법」은 경제사업의 시작을 인민경제계획의 작성부터라고 설명하면서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사업을 진행한다고 규정함(제10조)
- 국가정책은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제11조)
-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을 위해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이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추세, 자연부원 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 함(제12조)
-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하며(제13조),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함(제14조)
-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예비숫자¹⁰⁾를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를 관장하여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고(제16조),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숫자를 검토하여 통제숫자¹¹⁾를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함(제17조)
- 인민경제계획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물리는 방법으로 세워야 하며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제18조 제1항).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숫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균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함(제18조 제2항).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기하여야 함(제18조 제3항)

4.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제3장)

-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받아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야 함(제21조)

10) 예비숫자는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늘릴 가능성을 타산하여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숫자를 의미한다.

11) 통제숫자는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방향과 경제발전 수준 및 규모를 규정한 당과 국가의 지령으로, 공장기업소에서 올랐던 예비숫자에 기초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한다.

-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이를 토의함(제22조)
-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구체화시킴(제24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 수 없음(제25조)

5.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제4장)

-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작전과 계획을 바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실행함(제27조)
-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맺으며 주문계약은 수시로 맺을 수 있음(제29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이 예정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며 협동생산계획이 예정된 제품은 월상순 안으로 생산을 보장해야함(제32조)
- 노동행정 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실행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설비와 자재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함(제33조)
- 내각과 해당 기관은 생산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워야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매일 상급기관과 국가 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제35조)
-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경제계획을 변경시켜 실행하려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6조)

6.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제5장)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의 월별, 분기별, 상반기, 연간으로 실행총화를 통해 계획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정확히 실행하기 위해 노력함(제37조, 제38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실행계획에 대해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난 이후로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함(제39조)

7.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6장)

-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킴(제42조)
-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제43조)
- 국가계획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함(제44조)
-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할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여기에 인민경제계획에 따른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를 손해보상 함(제46조).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이나 개별적 공민이 인민경제계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따름(제47조, 제48조)

Ⅲ.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의 분석과 평가

1.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의 의의

1) 경제계획을 위한 법령체계 구축

-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이전까지는 인민경제계획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기 보다는 교시에 따라 시행되어 왔음
- 「인민경제계획법」은 교시에 의해 움직이던 계획화 사업을 법령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김정일 정권에서 시행하였던 사회주의 법제정비 사업¹²⁾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2) 김정일 정권이 시작한 사회주의 법제정비 사업은 사회주의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주의법치국가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북한은 사회주의 법제정비 사업을 '사회주의 법건설에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국가가 인민대중의 의사를 행위준칙으로 규범화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적인 의사로 전환하여 전 사회적인 생활규범, 행위규범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원,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참조.

2) 사회주의계획경제 실현을 위한 규범적 지침 마련

-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인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였음
- 이는 김정일 정권 출범 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정비 및 계획화 기능의 제고 차원에서 계획부문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임
- 특히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을 통해 당시 팽배해져 있던 자본주의 세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인민경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
- 또한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은 북한의 침체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실시한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음

2) 북한식 실용주의 추구

- 「인민경제계획법」은 제6조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실적조건을 옹계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계획실행규률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내용상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음
- 또한 제32조에서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며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제품은 월 상순안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화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할 것을 표방하고 있음
- 이러한 북한식 실리주의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지로 보이며 김정일 정권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¹³⁾에서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

2. 김정은 정권 이후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의 의의

13) 북한의 1990년대 시장화 현상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간의 괴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김정일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을 국가 관리로 유도할 필요성을 감지하였고 이에 2002년 시장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에 분권적 경영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에 비합법적 영역이었던 소비재 시장을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제도화하고, 기업 간 원자재와 생산재 교류가 가능한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19, 139면.

1) 경제계획지표의 분권화 추진

- 「인민경제계획법」은 제13조에서 인민경제계획지표에 대해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여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김정은 정권 이후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인데, 국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됨¹⁴⁾
- 이러한 변화는 계획을 통해서 기업에 하달하는 계획지표 체계가 정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래 기업에 하달되는 지표인 중앙지표, 성 및 관리국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중앙지표의 수를 줄이고 성 및 관리국 지표를 폐지하면서 기업소에 역할을 부여하는 기업소지표를 도입한 것에서 의의가 있음¹⁵⁾
- 이로써 기업소는 권한을 부여받고 독자적인 생산계획에 따른 기업소지표를 다른 기업소와의 주문계약 체결 방법으로 계획화하여 수행함

2) 경제계획에 주문계약방식 도입

- 「인민경제계획법」은 제18조에서 “인민경제계획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물리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균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제계획에 주문계약방식을 도입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수립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이들 사이에 주문계약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기업들이 주문계약을 통해서 유통시킬 수 없는 국가통제품으로는 국가계획으로 공급된 중앙지표의 물자, 고정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들과 화공품, 약품, 귀금속 등이 있으며, 소비품의 유통을 위한 주문계약은 생산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상업기업소 사이에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문계약방식의 확산추세에

14) 박해식·이윤식,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8, 31면.

15)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화하는 지표는 전략지표와 중요지표로 구성되는데, 전략지표와 중요지표를 제외한 지표가 기업소지표이며 기업소지표는 지표수로는 전체 지표의 70%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석기 외 6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96-97면.

따라 최근에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생산량의 90% 정도를 주문계약제에 의거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함¹⁶⁾

- 이러한 계획수립에 있어서 자율권 부여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추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정책에 따른 법제도적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기업소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일부분 공존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음

3) 처벌규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의 강화

- 「인민경제계획법」은 제46조에서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을 할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류용, 낭비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고 손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적 처벌(제47조)과 형사적 처벌(제48조)도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김정은 정권은 「인민경제계획법」과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행정적·형사적 처벌규정을 추가하였음
- 「인민경제계획법」 제47조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승인 없이 수정한 경우나 계획에 없는 부분을 생산·건설한 경우 등과 같이 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8호인 “계약을 바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김정은 정권 시기에 신설된 규정임
- 또한 「인민경제계획법」 제48조에서는 제4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인민경제계획규율위반죄에 대해 「형법」 제127조에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2015년 「형법」 제127조를 개정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규율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였음
-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형법」 제127조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 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김정은 정권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지방 또는 기업소지표계획’¹⁷⁾과 ‘중앙지표계획’으로 나누어 ‘지방 또는 기업소

16) 이석기 외 6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75면.

17)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에서 ‘기업소지표계획’의 개념이 추가됨에 따라 「형법」 제127조에서 ‘인민경제계획’을 구체화하여 처벌할 필요도 있었다.

지표계획’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제1항), ‘중앙지표계획’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음

- 이와 같이 인민경제계획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것은 시장화 현상으로 풀어진 대내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종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해설”, 『북한』 2000년 4월호, 북한연구소, 2000.
- 민준규·정승호,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2014-16호, 한국은행, 2014.
- 박정원,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의 내용과 특징 분석”, 『북한법연구』 제17호, 북한법연구회, 2017.
- 박정원,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 박해식·이윤석,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8.
- 이석기 외 6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2018.
- 이석기 외 6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2018.
- 장명봉 편, 『2018 최신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 제성호·임강택, 『북한 「인민경제계획법」의 분석 및 평가』, 통일연구원, 1999.
-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19.

2. 북한문헌

- 『광명백과사전 5(경제)』, 백과사전출판사, 20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